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0-58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11월 9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동작구에 있는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·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목적 및 정의를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4조)
- 다.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라. 자립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·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퇴소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.
2. “퇴소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청소년을 말한다.
  - 가.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아닌 청소년
  - 나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
  - 다.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
3. “보호조치 종료 아동”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퇴소아동,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(이하 “퇴소 청소년 등”이라 한다)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**제4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 사업)**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사업(이하 "지원사업"이라 한다)을 발굴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거·생활·취업 등의 지원
2.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
3.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
4.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
5. 정서적·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
6. 후견인 및 후원 연계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보호기간 연장)**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.

**제7조(자립지원센터 등)**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·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의회)**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

지역주민, 시민단체,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퇴소청소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9조(예산의 지원)**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